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2일, 김영호 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2.26.)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3.12.)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교육위원회(2026.3.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영호 의원)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에 방해되는 행

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집회·시위에서 확성기·음향기기 등을 이용한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으로 주변 학교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됨은 물론 학생의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집회·시위는 허용하되 폭언 등은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하여 학생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및 제1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12. 4.)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고민정 의원, 김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김민전, 서지영, 정성국, 조정훈 의원)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상황임. 해당 개정안은 집회·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조치임.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존재함에도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차별만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 집회·시위는 대부분 일회적·일시적으로 발생함에도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범위에서 해당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입법임. 동 법안은 교육환경의 보호라는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임.

(고민정, 김영호, 김준혁, 박성준 의원)

술집, 도박장 등과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한정하여 금지하는 것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임. 이는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경찰관서장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학교장이 요청하는 것에 불과함. ‘혐오’ 표현 대신 ‘차별·모욕·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명확성을 확보하였음.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규제가 어려운 상황임. 사회적 약자인 이주배경학생을 법률로 보호할 필요성이 큼. 개정안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아니한 포괄적인 입법임.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와 학습권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